



각종 환경분쟁관련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 요령(I)



류 일 선
국립축산과학원
수의연구관

최근 우리 축산농가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 및 우회도로 확장 및 신설, 석산의 채석장, 아파트, 골프장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부 다짐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과 법원의 소송 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진동·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에 따른 관련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이에 필자는 직접 법원소송 사건, 사실조회서 작성과 중앙과 각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전문가로 위촉을 받아 현지조사를 해오면서 피해보상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열거해 나가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본고를 정리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1. 환경분쟁 피해 보상방안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유·조·사산, 도태, 번식효율저하, 우유생산량 감소, 육질저하, 성장 지연, 자돈 압·폐사, 산자수 감소, 폐사, 질병 발생 등의 가축피해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가축의 구입, 인공수정 및 번식성적, 사료구입 등과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의 제반기록이 있어야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사장에서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어야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가축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나, 잘 안될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과 현재 환경부 산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각 지자체의 지방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소음, 진동 등의 환경분쟁피해에 따른 모든 사건들을 조정신청, 중재를 하여 처리를 하고 있다.

가. 환경분쟁발생시 가축피해 농가의 준비해야 할 항목 및 자료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분쟁시 가축 피해에 있어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들을 항시 준비해야 하나, 실제 본 전문가가 가축사육농장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할려고 하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두수마저도 잘 모르고, 피해 증거자료는 거의 없고, 구두로 피해만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함에 안타까움을 느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따라서,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축산농가는 아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준비와 자료 정리 등을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하단 표. 참조).

○ 사육 축종 및 규모

우리 축산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축종과 정확한 사육두수를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정도는 정기적으로 대장에 직접 수기로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항시 피해보상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 공사이전, 기간 중과 후의 사육두수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수년전에 경기도 OO지역의 양돈장사건시 사육두수를 놓고 양측이 심각하게 피해보상을 두고 대립하였을 때, 법정에서 사료 입고량으로 사육두수를 추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일간을 보고서 작성하는 데 진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는 두수가 어느 규모냐 따라서 피해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축산농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1개월에 1번 이상은 사육하고 두수와 암수별로 기록이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집중기획

1. 목장 주소지						목장명	
2. 목장주 성명						연락번호	
3. 사육 축종 및 규모(젖소, 한우)							
□ 젖소							
착유우	건유우	미경산우 (초임우)	육성우		자우		수소
			암	수	암	수	총계
□ 한우							
번식우	비육우	미경산우 (초임우)	육성우		자우		수소
			암	수	암	수	총계
4. 목장개사~현재(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목장 개시년도, 지번, 사육두수 등 • 변동사항(사육두수, 장소 변경, 축사 신축 등) 						
5. 축사형태(메세식, 개방식, 반개방형 등) 및 동수	동						
6. 착유방식							
7. 번식형태(인공수정, 자연교배 등)	• 인공수정, 자연교배, 자가인공수정(경력)						
8. 가축의 구입처, 방법 등	• 구입시 일시, 지명, 두수 등						
9. 관리인수	명						
10. 질병예방 및 처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약 및 회수 : 회/주,월 • 예방접종질병명 : • 질병발생시 처치방법 : 자가 / 왕진 • 동물병원명 및 원장 성명 : • 내·외기생충 구제 등 						
11. 환경분쟁피해시 사육가축의 초기 증상 및 피해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증상 • 유형별 피해정도 						
12. 피해이후 사공사육과의 분쟁해결노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이력 • 분쟁 발생시 사공사육 대처방법 및 해결 노력 등 						

○ 목장개사~현재(역사)

현지 실사에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목장의 최초 개시년도, 지번, 사육두수 등과 변동사항(사육두수, 장소 변경, 축사 신축 등)등의 조사가 이뤄지는 데, 이는 제 3자(관련 전문가, 시공사, 법정 등)가 목장주의 가축사육경력이 어느 정도이고, 충분히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파악할 수가 있으며, 이를 두고 피해 보상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번식형태

(인공수정, 자연교배 등)

예전과는 달리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경우, 축산관련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실시하

고 있는 교육이나 실습을 통해 많은 교육을 받고 있음에 따라,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소에 발정이 왔을 때 직접 자가인공수정을 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자가 인공수정을 하였을 경우, 수기나 컴퓨터 등으로 수정일자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자연교배의 경우는 더욱 더 난감할 때가 많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는데, 언제 수정이 되어서 임신이 되었는지 생식기 검사를 통한 임신진단을 해보지 않으면 더더욱 알 수가 없어 피해보상시 규모나 금액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 가축의 구입처, 방법 등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사육가축의 두수 중 특히 후보축이 감소함에 따른 대체를 위한 외부에서 구입하여 입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구입시 일시, 지명, 두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하며, 매매계약서(매도인과 매수인, 두수, 축종, 일시, 사육장소 등)를 받아 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 질병예방 및 처치 방법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횟수, 예방접종실시 유무, 질병발생시 처치방법(자가 / 왕진), 내·외기생충 구제 등을 참고하는 바, 이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중요한 하나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 환경분쟁피해시 사육가축의 초기 증상 및 피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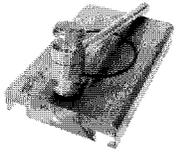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두는 것으로서 시공사에서 인접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초기에 가축의 반응, 증상 등과 이후 피해로 나타나는 항목(유·조·사산, 폐사, 도태, 번식을 저하, 성장지연, 육질저하, 우유생산량 감소와 질병다발 등)의 유형별 피해정도 기록이 거의 전무하여 구술증언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항시 기록을 통한 대응만이 피해보상에 있어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해두고 싶다.

○ 피해이후 시공사측과의 분쟁해결노력 등

일반적으로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이러한 피해를 보았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느 농가의 경우에 피해가 어떻게 오는 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대처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축인공수정사나 동물병원 원장, 그리고 대학의 관련 교수 등을 통해 피해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피해 목장주가 시공사측에 가서 막무가내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흥분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규모가 큰 공사로 시공사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도 무반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잖은 마음고



생을 하는 농가가 의외로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며, 공사에 대한 이력, 분쟁 발생시 시공사측의 반응, 대처방법 및 해결 노력 등을 일일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2. 우리나라 환경분쟁 조정(調整)기관

1990년 8월에 환경분쟁조정법이 제정되고, '91년 2월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짐에 따라, '91년 7월부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했다.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내 환경부 건물 1층에 있고 조정위원은 상임위원(위원장) 1인과 비상임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사무국에서 일하는 사무국장과 심사관, 심사원 등 20여명은 모두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다.

지방에는 16개 시·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선하는 알선(斡旋)과 사실조사와 당사자 심문 절차를 통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조정(調停)을 할 수 있고, 준 사법적인 결정 기능인 재정(裁定)은 중앙위원회의 고유 관할이다.

3. 환경분쟁의 정의와 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조정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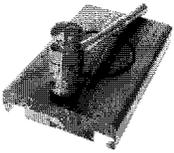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5. 조정신청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재산·정신에 관한 분쟁
- 환경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분쟁
-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분쟁
- 일조·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는 경우의 분쟁

6. 조정업무별 처리기관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건축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환경피해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중앙위원회에서 진행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 사무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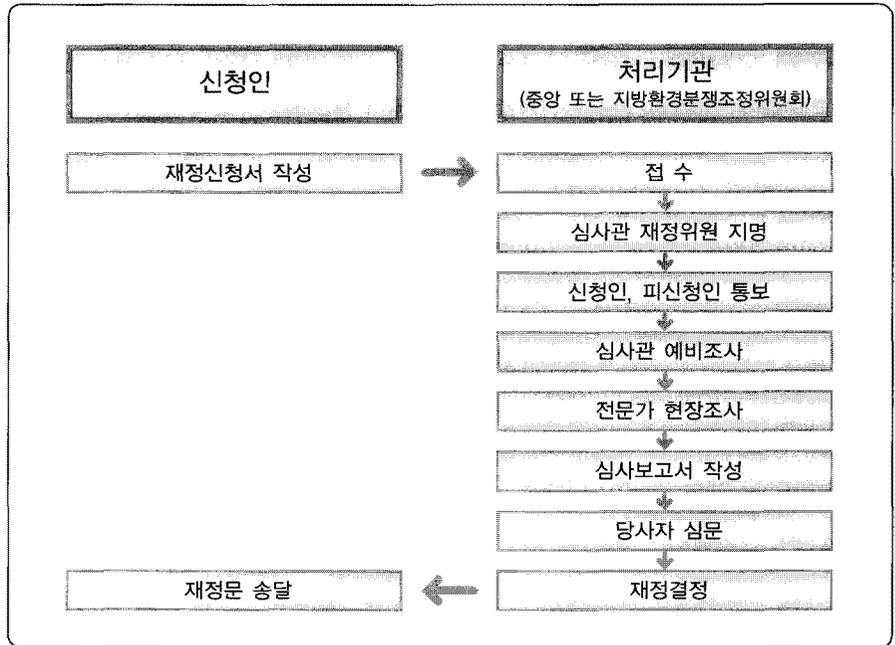
집중기획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가)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나) 조정가액이 50억원 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다만,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을 제외함)
 - 당해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調停)·알선(斡旋)

7. 신청사건 처리절차(재정의 경우)

○ 아래 사항은 재정신청 처리절차다.



- 신청인이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접수한다.
 - 대표자선정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 추가, 삭제 : 추가, 삭제 버튼으로 대표자선정을 추가·삭제할 수 있다.
- 처리기관은 중앙 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며, 아래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1) 접수
 - (2)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 (3) 신청인, 피신청인 통보
 - (4) 심사관 예비조사
 - (5) 전문가 현장조사
 - (6) 심사보고서 작성
 - (7) 당사자 심문
 - (8) 재정결정
- 처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재정문을 송달한다.

8. 조정의 효력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보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다. (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집중기획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상기 제출서류는 피해가 발생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과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나, 현재 까지 처리한 많은 사건 중에는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해사실을 제출 하지 못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사건을 현지조사하는 전문가나 심사관들이 겪는 안타까움이다.

9. 신청서식을 구하는 방법

- 신청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관련 설명은 아래의 별첨 상세설명에서 제공한 다(신청서 견본).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성호(명칭)		
	②성명(대표자) <small>홍길동 등 0명 (다수인인 경우 별첨)</small>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법인	(☐:)
		개인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성호(명칭) <small>신청인이 다수인 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기재</small>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상호(명칭) <small>피해를 준 상대방(다수인 경우 별첨2)</small>		
	⑨성명(대표자)		
	⑩주소	법인	
		개인	
⑪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7. 1 ~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공사장 등 오염원 기재
⑫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7. 1 ~ 현재까지 신청인 거주지 기재
⑬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 입은 사실을 6하 원칙에 준하여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3)
⑭피해(예상)금액			피해 배상 청구총액 기재
⑮분쟁의 경과			피해 과정을 시기별로 기재(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4)
⑯참고자료			피해입증 등에 관한 자료 제목기재(세부내용 별첨5)
<p>환경보존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환경보존조정위원회 귀중</p>			<p>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첨부)</p> <p>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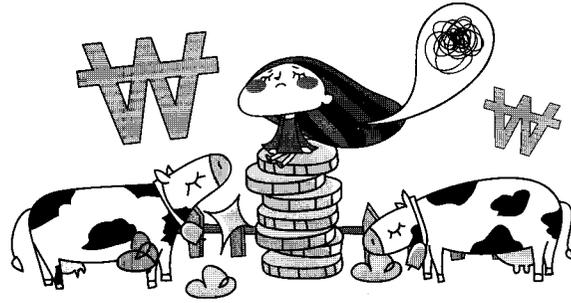
○ 신청인

2. 성명(대표자) : 홍길동 등 15명

○ 피신청인

8. 상호(명칭) : 피해를 준 상대방을 말함.
11. 오염발생의 일시 및 장소 : '07. 1 ~ 현재까지, 피신청인의 공사장
12. 피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 '07. 1 ~ 현재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13.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6하 원칙에 준하여 피해입은 사실내용을 기재

- 14. 피해(예상)금액
- 15. 분쟁의 경과
- 16. 참고자료



○ 축산물 피해의 경우

- 축산업 등록증 사본
- 피해입증 사진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3년간)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동물사육장 평면도 자료

□ 피해능가가 제출해야 할 자료

(예시)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가족 피해의 경우

○ 별첨1. 재정신청 사유

- '05.3월부터 00-00구간 건설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가족(젓소)의 성장이 지연되고 우유생산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체중이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젓소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 위 예시에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재 정 신 청 서			처리기간 9월이내
신 청 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
	④주소		③주민등록번호
		법인	(☎:)
		개인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상호(명칭)		※피해물 준 상대방
	⑨성명(대표자)		
	⑩주소		
		법인	
		개인	
⑪오염발생의 일시·장소			06.3 ~ 현재까지, 00~00도로 구간
⑫피해발생의 일시·장소			06.3 ~ 현재까지
⑬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 입은 사실내용을 기재(별첨1), 6개월칙에 준하여 작성
⑭피해(예상)금액			(별첨2)
⑮분쟁의 경과			(별첨3)
⑯참고자료			(별첨4)
환경분쟁조정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수입인자 또는 수입증지 첨부) 시행령 별표 또는 시·도 조례 참조



집중기획

○ 별첨2. 피해배상 청구내역

피 해 내 역	피해액(원)	비 고
젓소의 폐사	30,000,000	근거자료 첨부
젓소의 유산	1,500,000	"
우유생산저감으로 인한 소득감소	60,000,000	"
정신적피해	1,000,000	"
계	92,500,000	"

○ 별첨3. 분쟁의 경과(של 내용)이 없으면 생략해도 됨)

- '06. 3. :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 '06. 4. 22 : 목장인근에서 공사시작
- '06. 6. : 피해발생으로 시공사 공사중지 요구
- '06. 7. 10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환경분쟁조정신청 권고)

○ 별첨4. 첨부서류

- 축산물 피해
 - 피해사진
 - 동물사육장 평면도 자료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최근 5년간)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10.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실태 및 현황

가. 총 괄

(단위 : 건수)

구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자진 철회	처리중 (이월)
	계	접수	전년이월	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		
합계	-	2,867	-	2,416	1,403	51	962	340	111
'10.12.31	317	220	97	174	116	2	56	32	111
'09	416	242	174	283	230	7	46	36	97

'08	391	301	90	209	149	-	60	8	174
'07	275	196	79	172	126	3	43	13	90
'06	276	202	74	165	83	2	80	32	79
'05	266	166	100	174	100	4	70	18	74
'04	372	195	177	223	101	1	121	49	100
'03	550	350	200	292	87	-	205	81	177
'02	493	440	53	263	118	2	143	30	200
'01	184	154	30	121	68	7	46	10	53
'00	100	70	30	60	39	3	18	10	30
'99	119	82	37	79	35	1	43	10	30
'98이전	249	249		201	151	19	31	11	3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91. 7. 19 ~ '10. 12. 31까지 총 2,867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처리(재정, 조정, 중재합의)하였으며, 340건은 자진철회로 종결되었고, 111건은 현재 처리중임

나. 피해원인

처리된 2,416건 중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2,070건(86%), 대기오염 155건(6%), 수질오염 72건(3%), 해양오염 9건(0%), 기타 110건(5%)임

(단위: 건수, %)

구분	계	소음·진동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기타*
계(%)	2,416(100)	2,070(86)	155(6)	72(3)	9(-)	110(5)
'10.12.31	174	148	3	6	-	17
'09	283	241	13	2	-	27
'08	209	173	8	3	-	25
'07	172	142	7	3	-	20
'06	165	150	8	3	-	4
'05	174	151	11	5	-	7
'04	223	206	8	3	1	5
'03	292	264	19	8	-	1



집중기획

'02	263	229	26	4	-	4
'01	121	103	11	7	-	-
'00	60	49	7	4	-	-
'99	79	67	8	4	-	-
'98이전	201	147	26	20	8	-

* 기타 : 토양오염 5, 추락위험 1, 기름유출 2, 생태계 1, 일조 76, 입지선정 2, 통풍방해·조망 11, 해충 6, 실내공기 1, 악취 5

다. 피해내용

처리된 2,416 중 정신적 피해가 951건(39%)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559건(23%), 축산물 피해 308건(13%), 농작물 피해 151건(6%), 건축물 피해 78건(3%), 수산물 피해 66건(3%), 기타 303건(13%)임

(단위 : 건수, %)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 정신적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건축물 피해	내륙 수산물 피해	해양 수산물 피해	기타 피해
계 (%)	2,416 (100)	951 (39)	559 (23)	308 (13)	151 (6)	78 (3)	55 (2)	11 (1)	303 (13)
'10.12.31	174	63	33	22	13	6	8	-	29
'09	283	127	55	20	16	9	4	1	51
'08	209	71	57	19	18	4	5	-	35
'07	172	45	54	17	18	3	1	-	34
'06	165	74	40	20	6	3	2	-	20
'05	174	72	40	22	10	1	4	-	25
'04	223	107	49	33	9	1	1	1	22
'03	292	149	58	18	9	12	5	-	41
'02	263	121	65	42	13	7	1	-	14
'01	121	36	33	26	8	2	5	-	11
'00	60	16	13	15	4	2	5	-	5
'99	79	19	22	23	6	4	2	-	3
'98이전	201	51	40	31	21	24	12	9	13

* 기타는 영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임

라. 발생지역

처리된 2,416건 중 서울 593(25%), 경기 559(23%), 인천 132건(5%)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1,284건으로 53%를 차지하고, 나머지 시·도에서 1,132건으로 47%를 차지함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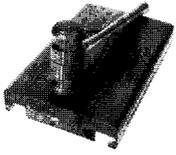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	2,416 (100)	593 (25)	146 (6)	31 (1)	132 (5)	26 (1)	37 (2)	51 (2)	559 (23)	85 (4)	88 (4)	100 (4)	104 (4)	134 (6)	152 (6)	169 (7)	10 (-)
'10.12.31	174	35	15	5	4	4	-	2	46	6	8	11	8	7	6	14	3
'09	283	79	10	3	16	2	2	5	71	9	14	7	9	18	16	22	-
'08	209	37	9	5	5	1	1	2	54	8	5	12	8	6	16	40	-
'07	172	25	15	1	12	6	1	3	25	11	2	7	12	13	17	22	-
'06	165	34	14	3	17	1	2	3	40	4	4	2	8	8	16	9	-
'05	174	34	20	2	9	1	1	1	39	4	6	9	7	13	11	16	1
'04	223	59	19	1	4	2	4	6	59	7	2	5	4	21	16	13	1
'03	292	94	23	5	16	4	8	5	59	10	7	6	14	12	15	11	3
'02	263	57	6	2	15	3	5	21	59	9	18	12	15	11	19	10	1
'01	121	33	4	-	6	1	5	3	27	3	7	5	6	9	11	1	-
'00	60	14	-	1	3	-	2	-	18	5	1	3	-	5	5	3	-
'99	79	27	1	-	13	1	2	-	17	1	4	8	1	1	1	1	1
'98이전	201	65	9	3	12	-	4	-	45	8	10	13	12	10	3	7	-

마. 처리기간

처리된 2,416건 중 3개월 이내에 처리한 사건이 470건(19%), 4~6개월 1,085건(45%), 7~9개월 768건(32%), 10개월 이상 93건(4%) 등으로 평균 처리기간은 5.4개월임

(단위: 건수, 개월, %)

구분	처리 건수	평균 처리 기간	기간별처리건수									
			1월 미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이상
계 (%)	2,416 (100)	5.4	86 (4)	128 (5)	256 (11)	302 (13)	396 (16)	387 (16)	312 (13)	256 (11)	200 (8)	93 (3)



집중기획

'10.12.31	174	5.6	3	6	16	14	22	29	30	31	22	1
'09	283	5.5	5	18	15	25	38	62	48	42	27	3
'08	209	5.0	9	7	24	36	55	40	24	6	3	5
'07	172	5.2	1	11	7	31	54	39	18	7	1	3
'06	165	5.6	5	5	9	20	39	34	29	14	8	2
'05	174	6.4	3	4	6	10	25	38	37	26	19	6
'04	223	7.3	14	1	5	9	14	13	32	39	66	30
'03	292	6.5	10	8	10	9	31	59	60	63	33	9
'02	263	3.1	17	39	86	69	45	7	-	-	-	-
'01	121	3.5	10	13	27	33	15	9	6	5	1	2
'00	60	4.7	3	4	11	8	9	7	5	6	4	3
'99	79	5.4	1	3	8	14	14	16	9	6	5	3
'98이전	201	5.7	5	9	32	24	35	34	14	11	11	26

* 1월을 30일로 하여 산정함

바. 처리형태

처리된 2,416 중 재정사건은 2,365건이며, 이중 배상결정은 1,120건(47%), 기각 269건(11%), 방음대책 등 14건(1%), 중재합의 962건(41%)이며, 조정사건은 51건으로 이중 조정성립 21건(41%), 조정중단 28건(55%), 기각 2건(4%)임

(단위: 건수, %)

구분	처리 건수	재정(裁定)사건					조정(調停)사건			
		계	재정회의			중재 합의	계	조정 성립	조정 중단	기각
			배상 결정	기각	방음 대책 등					
합계 (%)	2,416	2,365 (100)	1,120 (47)	269 (11)	14 (1)	962 (41)	51 (100)	21 (41)	28 (55)	2 (4)
'10.12.31	174	172	89	26	1	56	2	-	2	-
'09	283	276	169	59	2	46	7	4	3	-
'08	209	209	127	21	1	60	-	-	-	-
'07	172	169	107	18	1	43	3	3	-	-
'06	165	163	62	20	1	80	2	-	2	-

'05	174	170	74	24	2	70	4	1	3	-
'04	223	222	80	19	2	121	1	-	1	-
'03	292	292	66	19	2	205	-	-	-	-
'02	263	261	105	12	1	143	2	1	1	-
'01	121	114	59	8	1	46	7	3	4	-
'00	60	57	32	7	-	18	3	2	1	-
'99	79	78	32	3	-	43	1	1	-	-
'98이전	201	182	118	33	-	31	19	6	11	2

사. 배상 결정율

□ 처리된 2,416건 중 배상결정 현황

(단위 : 건수, %)

조정(調整)현황	배상결정	중재합의	기각	방음대책 및 조정중단 등
2,416 (100)	1,120 (46)	962 (11)	271 (11)	63 (3)

□ 배상 결정한 1,120건의 신청금액은 461,743,412천원, 배상 결정액은 42,902,806천원, 배상율은 9.3%임

(단위 : 건수, 천원, %)

구분	건수	신청금액(A)	배상결정액(B)	배상율(B/A)
계	1,120	461,743,412	42,902,806	9.3
'10. 12. 31	89	32,183,067	2,299,414	7.1
'09	169	61,711,877	3,846,699	6.2
'08	127	41,360,289	5,180,930	12.5
'07	107	52,386,409	5,306,765	10.1
'06	62	29,794,319	1,577,988	5.3
'05	74	30,469,412	2,566,881	8.4
'04	80	28,267,030	2,645,041	9.4
'03	66	25,246,840	4,020,242	15.9



집중기획

'02	105	40,737,955	4,250,725	10.4
'01	59	15,445,239	2,735,743	17.7
'00	32	11,500,719	899,000	7.8
'99	32	11,266,595	675,276	6.0
'98이전	118	81,373,661	6,898,102	8.5
	1,120	461,743,412	42,902,806	125.3

아. 합의율

처리된 2,416건 중 효력이 확정된 2,416건의 내용을 보면, 2,032건(84%)은 합의, 384건(16%)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 제기

(단위: 건수, %)

구분	조정(調整)현황	효력 확정			합의기간 미도래
		계	합의	미합의	
합계	2,416	2,416(100)	2,032(84)	384(16)	-
'10. 12. 31	174	174	145	29	-
'09	283	283	245	38	-
'08	209	209	177	32	-
'07	172	172	146	26	-
'06	165	165	147	18	-
'05	174	174	140	34	-
'04	223	223	191	32	-
'03	292	292	262	30	-
'02	263	263	221	42	-
'01	121	121	90	31	-
'00	60	60	50	10	-
'99	79	79	71	8	-
'98이전	201	201	147	54	-

자. 재정(裁定) 사건의 소송 현황

○ 2004년 이후 재정 결정한 870건 중 173건이 법원에 소가 제기 됨으로써 소

송률(불복률)이 전체 약 20%를 차지하며,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건 112건을 분석하면 인용 80건(인용률 71%), 불인용 32건(불인용율 29%)이며, 나머지 61건은 소송이 진행 중(49건)이거나, 소가 취하(12건)되었음

(단위 : 건수, %)

구분	재정	소송	소송결과				진행중
			소재	인용	불인용	기타 (소취하 등)	
합계	870	173(20)	124	80(71)	32(29)	12	49
'10. 12. 31	81	8	-	-	-	-	8
'09	230	35	6	3	2	1	29
'08	149	32	25	16	8	1	7
'07	126	26	23	18	4	1	3
'06	83	13	13	7	2	4	-
'05	100	29	27	18	6	3	2
'04	101	30	30	18	10	2	-

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위원회 연락처 및 주소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02-2115-7494 02-2115-7495 02-2115-7451	02-2115-7429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 남산별관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051-888-2397	051-888-3609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
대구광역시	환경정책과	053-803-4184	053-803-4179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053-440-3433	032-440-3519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	062-613-4142	062-613-4129	(502-70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600-3622	042-600-2619	(302-789)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052-229-3153	052-229-3149	(680-701) 울산광역시 남구 선정1동 646-4



집중기획

경기도	환경정책과	031-249-4793 031-249-3540 031-249-4226	031-249-3539	(441-701) 경기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강원도	환경정책과	033-249-2243	033-249-2580	(200-700) 강원 춘천시 중앙로1 강원도청신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043-220-4752	043-220-4749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
충청남도	환경관리과	042-220-3579	042-220-3519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063-280-3552	063-280-2735	(560-28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전라남도	환경정책과	061-286-7022	061-286-4796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3-950-3984	053-950-3519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4동 1445-3
경상남도	환경정책과	055-211-4122	055-211-4119	(641-702) 경남 창원시 사림동 대방로1가
제주도	생활환경과	064-710-6052	064-710-6099	(690-700) 제주 제주시 연동 312-1

